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 특약

제 1조 [목적 및 적용대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건강등급의 개념]

제 4조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제 5조 [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제 6조 [건강등급의 재산정]

제 7조 [계약전환의 안내]

제 8조 [계약전환의 적용]

제 9조 [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준용규정]

건강등급 적용 표준체 계약전환 특약

제 1조 [목적 및 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건강등급 및 계약전환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하며, 특약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약전환 관련 용어

- 가. 전환 전 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간편심사형 계약을 말합니다.
- 나. 전환 후 계약: 전환 전 계약에 대하여 제8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일반심사형 계약으로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을 말합니다.
- 다.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계약자가 이 특약에 따라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최초 계약체결 이후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라. 특정질병: 최초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질문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 3조 [건강등급의 개념]

① 건강등급이란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수준을 등급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건강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건강등급은 건강등급 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강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건강등급 산출 및 정보 제공회사”라 합니다)의 건강등급 산출시스템을 통해 산출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등급 산출 시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중 가장 최신 결과(다만,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거나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및 직전 2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의 의료이용기록 등이 사용되며,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등급 산출에 필요한 지표: BMI, 혈압(수축기/이완기), 요단백, 혈색소,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크레아티닌, 간기능 수치(ALT, 감마GTP), 내원일수, 총 급여비용, 흡연여부 등

④ 건강등급은 제5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에 따라 청약 시 산정된 건강등급을 최초로

적용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 주기로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건강등급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5조(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및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이전에 건강등급 산출 후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납입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됩니다.

제 4조 [계약전환의 적용대상]

① “전환 전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전환의 대상으로 합니다.

1. 최초 청약 시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한 계약
2. 전환 신청 시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3. 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
4. 전환 전 계약이 간편심사형인 계약
5. 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65세 이하인 계약
6. 전환 전 계약의 주계약 납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②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전환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한 건강등급”을 보유한 경우
2. 전환신청일 직전 “건강등급 재산정일”에 피보험자의 건강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3. 피보험자가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4. 피보험자가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특정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 합계가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이 모두 보험료 납입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제2항 제1호의 “유효한 건강등급”이란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적용된 건강등급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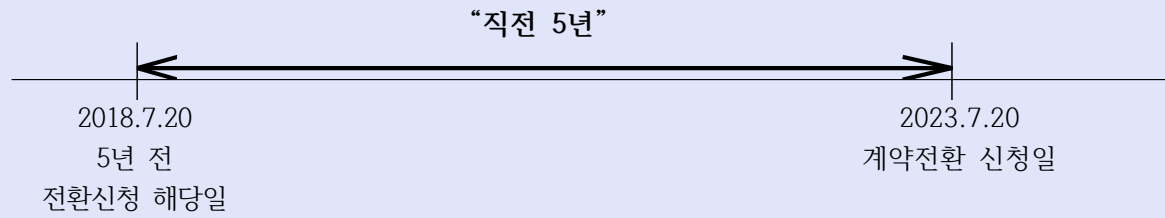
⑥ 제2항의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이라 함은 5년 전 전환신청 해당일로부터 전환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전환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전환신청 해당일로 합니다.

⑦ 제2항 제2호의 “건강등급 재산정일”이란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른 연계약해당월의 첫 번째 날(1일)을 말합니다.

[계약전환 시 확인사항 예시]

“전환신청일로부터 직전 5년동안” (제4조 제6항)

<예시> 2023년 7월 20일 계약전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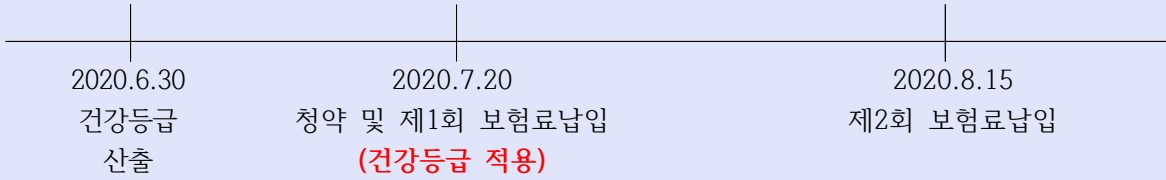
제 5조 [청약 시 건강등급의 산정]

- ① 주계약 청약 시 이 특약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청약일까지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하며, 청약 시 적용하는 건강등급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6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으로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등급은 청약일부터 적용하며,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라 다음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건강등급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청약 완료 이후 피보험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건강등급 산출 방법 및 청약 이후 건강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산정기한”이라 합니다)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산정기한”이라 함은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날로부터 15일과 제2회 보험료 납입 기일 직전 2영업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 ⑤ 제3항에 따라 건강등급의 산출이 필요한 피보험자는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는 제2회 보험료부터 건강등급을 적용합니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제6조(건강등급의 재산정)에 따른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납입 보험료부터 “건강등급 재산정일”까지 건강등급이 적용됩니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건강등급이 적용되어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적용된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최초 가입 시 건강등급 적용 절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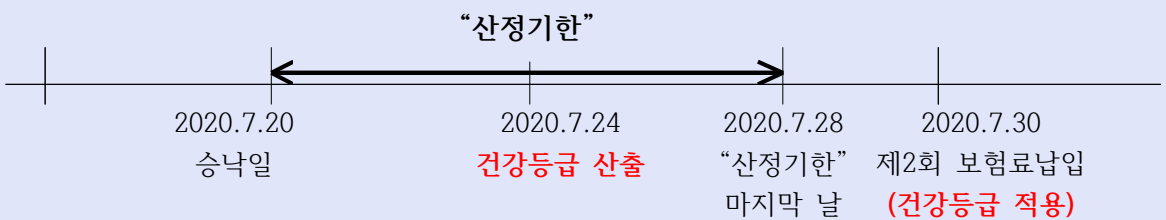
① “청약 이전”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제5조 제1항)

<예시> 7월 20일 청약 및 제1회 보험료 납입, 8월 15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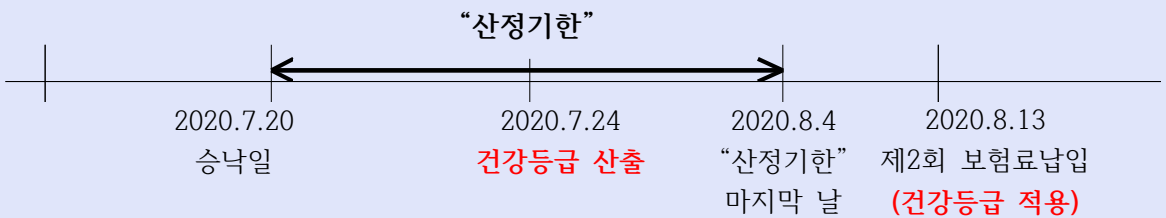
②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직전 2영업일 < 승낙 이후 15일 이전 (제5조 제5항)

<예시> 7월 20일 승낙, 7월 30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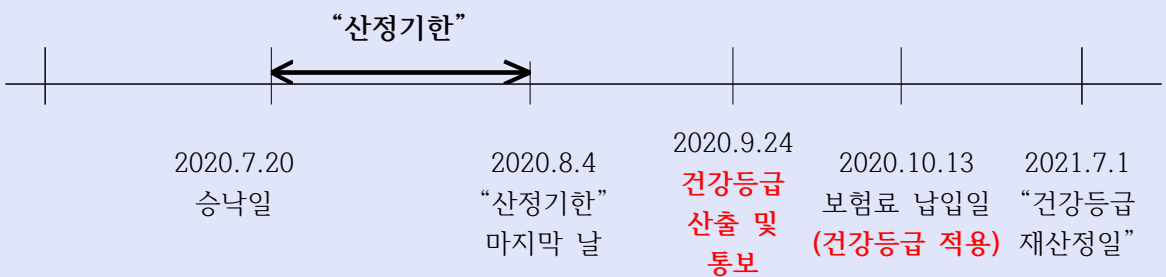
③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직전 2영업일 > 승낙 이후 15일 이전 (제5조 제5항)

<예시> 7월 20일 승낙, 8월 13일 제2회 보험료 납입기일



④ “산정기한”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최초 도래하는 “건강등급 재산정일” 이전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제5조 제7항)

<예시> 연계약해당월 매년 7월,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13일



제 6조 [건강등급의 재산정]

① 건강등급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1년을 주기로 재산정하여 변경 적용하며, 피보험자는 매년 연계약해당월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재산정 기간”이라 합니다) 건강등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년 “재산정 기간”이 도래하면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건강등급 재산정일” 직전 1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건강등급 재산정 기간
2. 건강등급 산출 방법
3. 건강등급 변경 시 적용되는 할인을
4. 제6항에 따라 건강등급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

③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연계약해당월의 첫 번째 날(1일)(이하 “건강등급 재산정일”이라 합니다)에 건강등급을 변경 적용하며, 변경된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있는 경우, 직전 90일 이내 산출한 건강등급 중 가장 최근에 산출한 건강등급을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변경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등급 및 변경된 보험료에 대해 “건강등급 재산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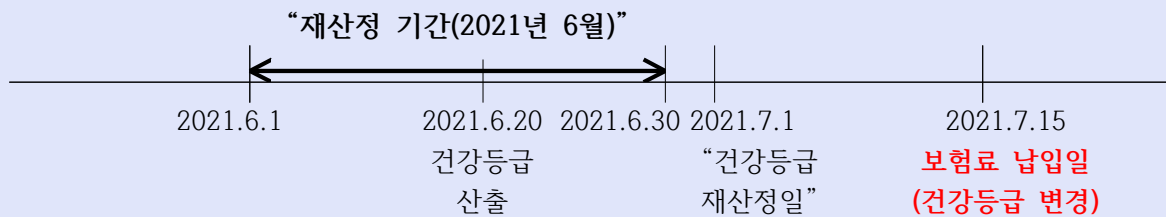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며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그 날을 포함하여 직전 90일 이내에 산출한 건강등급이 없는 경우, 건강등급은 다음연도 “건강등급 재산정일” 전일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등급 할인 대상상품”이 모두 보험료 납입 면제된 경우에는 건강등급 재산정 대상 계약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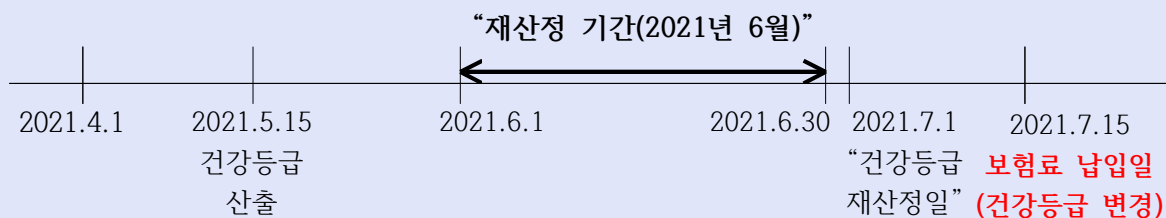
[건강등급 재산정 절차 예시]

<예시> 연계약해당월 매년 7월,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15일

①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한 경우 (제6조 제3항)



② “재산정 기간” 이내에 건강등급을 산출하지 않았으나, “건강등급 재산정일” 직전 90일 이내 산출한 건강등급이 있는 경우 (제6조 제4항)



제 7조 [계약전환의 안내]

- ① 회사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종료일 전까지 매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계약전환 요건 및 계약전환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계약전환의 적용대상)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에 대하여는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내에 계약자의 계약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8조 [계약전환의 적용]

- ① 계약자는 계약전환 신청 가능 기간 내에서 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4조(계약 전환의 적용대상)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할 경우 일반심사형 계약으로 계약을 전환하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 전 계약의 잔여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 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됩니다.
 1. 납입면제사유를 제외한 보장내용
 2. 갱신/비갱신 유형
 3. 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4. 간편심사 유형 변경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제 9조 [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8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계약전환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전환 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과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 ② 제8조(계약전환의 적용) 제1항에 따른 계약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계약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며, 세부보장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전환 전 계약에서 해당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계약에 대한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효력이 없어진 이후 납입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및 “건강등급적용특약Ⅱ”의 약관을 준용합니다.